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

최저임금법 부칙(2005.5.31., 법률 제7563호) 제3항에 따라 2011.7.1부터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20인 미만)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하게 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전해야 함

[산정례] 주40시간제 도입시 임금이 주급제인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 단축 전 : (44시간+유급 주휴 8시간) × 4,320원
(2011년 적용 최저임금) = 224,640원
 - 단축 후 :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 × 4,580원
(2012년 적용 최저임금) = 219,840원
 - 2012년 보전분 224,640원 – 219,840원 = 4,800원
→ 224,640원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임

[산정례] 주40시간제 도입시 임금이 월급제인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 단축 전 : 월환산시간 226시간 × 4,320원(2011년 적용 최저임금) = 976,320원
 - 단축 후: 월환산시간 209시간 × 4,580원(2012년 적용 최저임금) = 957,220원
 - 2012년 보전분 : 976,320원 – 957,220원 = 19,100원
→ 976,320원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임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250-5703~4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02-3465-8441~7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02-2142-8896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02-2077-6103~7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02-2639-2112~3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02-950-9880~1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02-3282-9111~2

• 중부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032-460-4545~7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032-540-7910~12
경기고용노동지청 031-259-0203~5
평택고용노동지청 031-617-9010
부천고용노동지청 031-714-8700~3
안양고용노동지청 031-463-7302~4
안산고용노동지청 031-486-0009
의정부고용노동지청 031-850-7773~5

고양고용노동지청 031-931-2801~4
성남고용노동지청 031-788-1505~8
강원고용노동지청 033-258-3551~2
강릉고용노동지청 033-650-2500
부주고용노동지청 033-769-0800
태백고용노동지청 033-552-0009
영월출장소 033-374-0009

•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3-0009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051-559-6688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051-309-1500~5
창원고용노동지청 055-239-6500

울산고용노동지청 052-272-0009
양산고용노동지청 055-387-0009
진주고용노동지청 055-752-0009
통영고용노동지청 055-645-0009

• 대구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667-6200
대구북부고용노동지청 053-605-9000~5
포항고용노동지청 054-271-6700

구미고용노동지청 054-450-3500~3
영주고용노동지청 054-639-1111
안동고용노동지청 054-851-8000~4

• 광주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2-975-6201~4
제주근로개선지도과 064-728-6100
전주고용노동지청 063-240-3400
의산고용노동지청 063-839-0008~9

군산고용노동지청 063-452-0009
목포고용노동지청 061-284-0009
여수고용노동지청 061-650-0109

• 대전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290~3
청주고용노동지청 043-299-1131~3
천안고용노동지청 041-560-2800~2

충주고용노동지청 043-840-4000~4
보령고용노동지청 041-930-6138~9



www.moel.go.kr

2012년 최저임금 제대로 알기!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하기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①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②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③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됨(시행규칙 제2조)

[산정례] 임금이 일급제인 경우

- 1일의 임금("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말함)이 40,000원인 근로자로서 1일 8시간 근로한 경우
 - 시간당 임금 산정 : 40,000원 ÷ 8시간 = 5,000원
 - 미달 여부 판단 : 시간당 임금(5,000원)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2012.1.1~2012.12.31 : 4,580원**)
→ 최저임금법 위반 아님.

[산정례] 임금이 월급제인 경우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월~금요일 8시간)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95만원의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
 - 연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365 ÷ 7) ÷ 12월 = 209시간
 - 시간당 임금의 산정 : 95만원 ÷ 209시간 ≈ 4,545원
 - 미달 여부 판단 : 시간당 임금(4,545원)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2012. 1.1~2012.12.31 : 4,580원**)
→ 최저임금법 위반임

최저임금 한 눈에 알아보기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A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등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A 현재 고시된 최저임금(‘12년도 적용)은 모든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시간급 4,580원 또는 일급(8시간 기준) 36,640원입니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같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얻은 자(시행령 개정 중)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한 금액(시간급 4,122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되고 어느기간 동안 적용되나요?

A 매년 8월경 다음 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다음 년도 1.1.부터 12.31.까지 적용 됩니다.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A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대표 9명, 사용자대표 9명, 공익대표 9명 등으로 구성)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을 심의·의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의 제기기간을 거쳐 고시함으로써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①지급받는 임금에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생활보조 또는 복리 후생적 수당은 제외)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②이를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초과근로, 휴일 근로 제외)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③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의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참조

월급과 최저임금은 같은 것인가요?

A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과 같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등은 포함되나, 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의 생활보조적 수당과 상여금, 초과 근무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월급의 범위보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작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이 두가지를 같이 처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때 권리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음)